

**신노후생활연금신탁 채권형 제( )호 약관 (구 서울은행) 개정 대비표**

개정전	개정후	비 고
<p>신노후생활연금신탁 채권형 제 ( )호 약관 (구 서울은행)</p> <p>제23조(신탁보수)</p> <p>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<u>1.2%</u>로 합니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신노후생활연금신탁 채권형 제 ( )호 약관 (구 서울은행)</p> <p>제23조(신탁보수)</p> <p>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<u>0.3%</u>로 합니다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<u>부칙 (2)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약관은 2020. 7. 27. 부터 시행하기로 한다.</u></p>	<p>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탁보수율을 인하하고자함.</p>